

對 EC

電子協商 進行過程

및 問題點

〈本會 國際部〉

1. 背 景

가. 1985年 6月 EC 12個国은 EEC역내 市場을 1992年까지 단일화 시킨다는 「Commission's White Paper」라는 條約을 체결하였다. 이는 EC 會員国間의 相互補完的인 강점을 최대한으로 살려 失業者 問題와 景氣 활력소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方法이라고 굳게 믿게 된 것이다. 經濟의 국경선을 없애고 300여종이 넘는 相互 保護장벽을 제거하며 貧富의 차이가 있는 域内 會員国 經濟水準을 平均화시킨다는 생각에서 출발한 것이다. 노동력의 移動이 자유로워지며 無關稅 輸入品이 相互 自由로 交流될 수 있도록 고안되어 있다.

나. 위와 같은 背景을 가진 EC의 電子業界는 該간의 소홀했던 事業성의 追求나 國際競爭力 향상에 最大의 노력을 기울이게 되었고 Macro Economic Policy를 소극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던 현재까지의 태도에 커다란 변화 조짐을 보이게 되었다. 여기에는 EC電子業界가 가지고 있는 高質적인 弱點이라고 할 수 있는 高賃金, 低生産性, 技術優位 확보문제 등으로 인하여 EC 電子業界의 대표적인 企業인 Philips社 마저도 그 生産基地를 自国 이외의 국가에 두고 있으며 EC 域内の 需要 충당에 안간 힘을 써고 있는중이다. 이런 環境下에서 日本에 이어 韓國이 1985年度부터 주로 家電製品을 輸出해 오고 있다.

다. 이에 EC 電子業界는 1987年 까지 總 20大 電子會社가 合作, 提携, 統合을 이루었고 이 중에서도 荷蘭의 Philips 이외에 당시까지 주로 醫療機器 專門 메이커였던 프랑스 Thomson社 가 家電分野로 轉換하여 政府 補助金 10억 달러를 받아 유럽내 家電工場을 사들이게 되었다.

EC 電子業界가 家電分野를 중요시하는 데는 나름대로 명분있는 이유를 제기하고 있다.

- ① 電子分野에서 micro-electronics市場을 확보할 수 없다면 電子業界가 도산하게 된다는 것이고
- ② Micro-electronics의 근간이 바로 家電分野라는 것이고
- ③ 家電分野가 도산하면 電子部品 分野도 도산하게 된다는 논리이고
- ④ 家電分野를 지키기 위하여 EC의 強力한 支援을 要請하여 적극적인 支援을 받게 된 것임.

라. 마지막으로 EC 電子業界의 認識의 변화가 커다란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즉 현재까지의 EC의 域内 需要 충당에 만족하지 않고 生産施設을 배가하여 제3 國 市場에서의 경쟁력 확보를 위하여 EC 域内로 輸出하는 國家에 대한 압력수단을 강구하고 있다.

즉 거대한 EC 12개國의 영향력을 행사하여

파상적인 압력을 가해오고 있다. 压力 中에는 市場開放, 換率引上, 知的所有權 保護, 農産物, 保險市場 開放 등 다양한 것들이며 목적을 위하여는 反덤핑規制 手段 이전단계로서 이들 電子 業界가 내놓는 몇가지 불평의 事例들이 있다.

- ① 輸出物量은 輸出國의 內需市場 규모에 비례해야 한다.
- ② 內需市場 規模보다 輸出規模가 큰 국가에 대한 과대 生産設備은 무조건 줄여야 한다.
- ③ EC 電子業界가 직접 競争할 수 없는 價格面에서는 機能, 모델, 기타 特殊与件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EC 製品보다 싼 경우 무조건 덤핑으로 規定하고 있으며
- ④ 家電 業界의 대표적인 企業이라고 할 수 있는 Philips나 Tomson社의 提案이나 意見을 EEC는 절대적으로 支援하고 있음.

2. 協商進行過程

가. 1985年 부터 시작된 韓國産 電子製品의 對EC 輸出은 컬러 TV가 그 선두 주자였고 뒤를 이어 CPT, MWO, VCR, CDP, TAPE 순이었다.

그러나 1986년 韓國産 및 日本産 MWO에 대한 덤핑 提訴가 있는 후로 CDP, CTV, VCR, TAPE 순으로 모두 反덤핑 提訴를 받게 되었다.

이에 EIAK는 商工부와 協議, 輸出의 적절한 조절을 할 수 있는 자체內의 管理制度로서 自律 規制 案(VRA)을 만들어 현재까지 施行해 오고 있다.

나. 1986년 10월 유럽 電子部品製造者協會 (EECA)에서 韓國産 CPT의 生産規模 및 對 EC 輸出物量에 대한 協商을 위하여 EECA 의 會長團 8명이 振興會를 방문하게 된 것이 시발점이 되어 政府의 承認下에 業界間의 협상이 시작되게 되었다.

問題의 CPT는 1988. 2. 24 최종 서명까지 무려 다섯번의 協商會議를 가진 끝에 反덤핑 提訴없이 自律規制物量(VRA)으로 타결하여 현재

까지 施行해 오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EECA에서 CPT의 物量規制를 원할 뿐아니라 CTV도 동일한 방법으로 규제해 줄것을 요구하기에 이르렀음.

이로 인하여 CTV 關聯 団体인 EACEM 과 協商을 하기에 이르렀고 아울러 VCR도 같은 단체인 EACEM과 協商을 하기에 이르렀으며 최종적으로 EACEM에서는 EIAK와의 VRA 妥結을 의면한 채 CTV/VCR 모두 A/D判定으로 태도를 돌변하였음.

다. 協商過程에서 EC 콤미손은 관리를 韓國에 과견하여 同製品의 協商妥結을 빨리 하도록 온갖 압력을 다 行事했으며 이외의 品目으로 MWO도 같은 物量規制 協商을 하도록 政府間 공식적인 채널을 통하여 압력을 행사했음.

라. 이에 EIAK는 MWO 提訴団体인 CECED와 4次에 걸친 協商 끝에 1988. 4. 13 최종 物量協商 타결을 본후 양측 政府의 추인을 요청 중이며 최근에 와서는 모든 品目の VRA를 근본적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EC의 공식 태도 표명을 하기에 이르렀음.

마. CTV/VCR의 協商妥結이 실패로 돌아간 원인은 대략 다음과 같은 이유에서 이며 이는 反덤핑 規制라는 방법 이외의 保護主義的 次元의 規制手段은 많은 會員國에서 반대하고 있다는 것이 드러나게 되었음.

- ① EACEM의 Council member는 EC 12개국의 電子關聯 製造者 協會들과 오스트리아가 Associate member로 참여하고 있으며
- ② 이들 12개국의 電子協會들은 自國 製造者의 이익 대변 기관으로서 대개 國家들은 製造者를 가지고 있지 않으며 주로 輸入에 의존하는 國家가 많다는 것이고
- ③ 提訴단체는 EACEM이나 실제 提訴者는 Philips라는 1個 製造者일 뿐이고 잔여 會員社들은 製造 보다는 輸入에 의존함으로써 相互 利益上의 충돌이 빚어지게 되었으며

④ 근본적으로 A/D 判定은 EC의 規定에 의한 合法的인 수속절차이나 輸出하는 國家로부터의 또다른 輸出物量의 규제라고 할 수 있는 VRA는 合法的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이유였고(GATT 정신위배, 자유무역 역행 등)

⑤ 이렇게 됨으로써 EACEM의 會員國 代表들이 EEC에 많은 문제를 提起하기에 이르러 EEC의 反덤핑 諮問委員會(Anti-dumping Advisory Committee)에서 7月15日 會議를 가져 더 이상 韓國의 VRA를 合法的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결정을 하기에 이르렀음.

3. 問題點

가. EEC의 對外 通商協商을 進行하는 주체가 지나치게 다원화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국인 韓國에서 單一案의 提案을 한다 하더라도 EEC 내부의 다양한 요구를 모두 수렴할 수 없다는 점. (例 VRA, A/D)

나. EEC에서 요구한 특정품목의 協商妥結을 위해 韓國側은 Package 개념으로 임해 왔고, 임할 수 있으나 EEC内部의 각기 다른 民間단체는 그 이해관계가 相互相衝되는 것이 많아 Package 개념을 받아들일 수 없는 사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EC 委員會에서 政府次元의 支援 내지 壓力을 사용하면서 Package 개념의 協商을 주도적으로 유도해 왔다는 점.

다. 韓國側은 Package 개념 뿐 아니라 Global 개념으로도 協商에 응해 주었고 이러한 背景下에서 자발적으로 協商을 주도해 왔고 적극적으로 합의점을 찾기에 노력을 아끼지 않았음. 이는 韓·EC 電子 業界間의 유대관계를 보다 長期的인 次元에서 相互補完的인 關係 定立을 위해 노력한 韓國側과는 달리 지금의 EC 電子 業界 反應은 長·短期를 불문 지금 당장의 이해득실에 유리한 일면만 추구하고 있다는 결론임.

라. 政府의 承認이나 業界의 合意點을 찾는

것이 EC 產業界가 훨씬 어렵다는 문제로서 民間團體間의 합의사항도 EC 12個國 會員國 政府 次元의 承認없이 유효할 수 없다는 것이고 더 나아가 최종적으로 EC 委員會의 承認을 얻지 못하면 모두 불가능하다는 복잡성이 있다는 점.

마. 일단 A/D 提訴를 받는 경우 EC 委員會의 實事결과 덤핑 嫌疑가 있는 경우는 모두 덤핑 判定 쪽으로 끌고 가지만 덤핑 嫌疑가 없을 때는 집요하게 物量規制를 요구해오고 있었다는 자체의 모순성을 여지없이 드러냈고 뿐만 아니라 反덤핑 調査節次나 過程에서 그 判斷基準이 애매모호하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며 EC 域內의 소비자의 이익 측면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는 또다른 불씨를 스스로 안고 있다는 점.

바. 결국 EC內의 특정 電子會社 또는 關聯 業界의 의견이 EC 12개國 모두의 지지를 받는 통일된 의견이 아니라는 것이 판명되었을 뿐 아니라 EC의 規定에 의한 反덤핑 提訴가 난무하는 狀況에서 反덤핑 判定結果와 같은 효과를 발휘할 수 있는 韓國의 VRA를 거부할 수밖에 없다는 EC의 電子業界나, 會員國, 委員會의 態度는 근본적으로 EC와는 通商協商이 불가능한 國家라는 認識을 주게 되었다는 점.

4. 선별적인 貿易報復行爲

— 韓·EC 通商紛糾上의 日本의 役割 —

가. EC 電子業界가 保守的인 域內市場 에만 몰두하고 있을때 日本으로부터의 輸出급증은 全產業에 걸쳐 끊임없는 분규 유발을 자초하였고 이를 회피하기 위한 現地投資가 10여년전부터 활발히 진행되어 현재는 EC 國적의 어느 企業보다도 규모나 生産製品에 있어 능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日本電子業界는 技術, 部品供給의 절대적인 우위의 利點을 십분 발휘하여 파상적인 EC의 덤핑 提訴를 무마내지는 현지투자 확대를 통하여 해결해오고 있다.

나. 현재 말썽이 되고 있는 VCR의 경우,

1980년에 日本産 VCR이 紛糾의 鴻역을 치른바 있고 Philips社의 V2000이라는 BETA方式製品의 실패로 VHS로 轉換하면서 技術協力 내지 特許權 移轉 등으로 큰 말썽없이 해결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EC域内 日本産 VCR이 年間 300만대 水準으로 生産되고 있어 全体 EC 国籍産業의 生産量 340만대를 육박하고 있으며 이에 韓國의 進出企業, 台灣 등의 進出 企業의 生産량과 EC의 현재 輸入量까지 합쳐 EC 總 需要量을 초과하게 되어 EC 国籍産業에게 피해를 준다는 주장이다.

다. 이에 韓國의 VCR 業界는 EC 産業에 피해를 주지 않는 선이라고 믿는 EC 총 수요량의 20% 範圍内에 輸出物量을 규제하겠다는 의사를 傳達 協商했으나 거부당하게 되었다.

라. EC는 日本 VCR 業界와 韓國의 VCR 業界를 동일선상에서 다루거나 취급하려 들지 않으며 20여개의 日本 VCR 製造会社中 A/D 提訴 対象者로 소규모 중소기업체 2個社만을 포함시켰으나 韓國에서는 전체 VCR 製造者를 提訴하였음.

마. 1986년 상반기부터 韓國産 電子輸出 主 種품목에 대한 무차별적인 反덤핑 提訴를 해왔고 동시에 物量規制를 끈질기게 요구해 왔었음. 이에 韓國의 電子業界는 VCR 문제에 대하여 자발적으로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바 있음.

- ① 1986. 10. VCR 輸出價 10% 引上
- ② 1987. 4. VCR 自律規制 실시
(Check price)
- ③ 1987년도: EC内 現地 投資擴大
(4개사 5개 공장)

바. EC 域内 輸入物量을 비교할때 日本産 보다 韓國産 製品을 主要 対象으로 하여 輸入規制

를 강화해 오고 있음.

뿐만 아니라 차별적으로 규제하고 있음.

- GSP 撤回

- 韓國産 VCR 輸出開始 後 EC 関稅引上 (14%)

사. EC 電子産業의 代表者格인 Philips 社は 極東地域에 25個의 工場 2만 7,000명의 종업원을 가지고 있으며 Philips 총 生産량의 8%와 총 구매액의 16%를 極東에서 유입하고 있으면서 EC 市場 자체의 수요를 쫓아 수출하는 일본을 위시한 NICS 국가 중 유독 韓國을 特別적으로 規制하고 있다는 것은 GATT 規定이나 EC의 전통적인 自由貿易主義에 역행하는 처사라고 볼 수 있음.

아. 자체산업의 약점을 보완하는 수단으로서 EC 전자업계가 추구하는 방향은 대략 다음과 같음.

- 高價品の 市場開發 및 維持(자체 산업 중심)
- 低價品 市場 伸張勢의 지지 내지는 말살
- 비교 우위적인 타국의 競爭力 拋棄 要求
(低賃金, 換率, 稅金 制度上的 유리한 점 拋棄 要求)
- 市場 占有率 高수를 위한 각종 輸入規制 방법 동원
(反덤핑, Safe Guard提訴, 安全規格 強化, 関稅引上 등)

자. 長期的인 協力 次元에서의 가능한 協力 分野를 최대한 개발하려고 노력하는 韓國의 立場을 이해하여 相互 비교우위적인 競爭力을 상호 보완하는 次元에서 현재까지의 대화를 계속 할 것을 요구하며 保護主義 일변도의 規制方法으로는 차후 유발하는 각종 후유증을 감당하기 힘들 것으로 思料됨.